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장동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251

발의연월일: 2025. 3. 21.

발 의 자: 장동혁 • 박준태 • 곽규택

조배숙・주진우・김상훈

김도읍 • 인요한 • 주호영

백종헌 • 박덕흠 • 이인선

조지연 · 정희용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

국내 체류 전체 외국인은 2025년 1월 262만여 명이고, 외국국적동포는 89만여 명으로 외국인 3명 중 1명은 동포일 정도로 외국국적동포의 수는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된 1 999년 12월 10만여 명에서 현재 9배 급증하였음.

또한, 2019년 7월 재외동포의 인정 범위가 3세대에서 4세대 이후 동 포로 확대되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동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 이며, 우수 청년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.

그러나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인 정 착 및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국내 체류 외 국국적동포들이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외국국적동포의 법적 권리를 고양하고 모국에 보다 큰 자긍심을 갖게 하고 국민과의 통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"외국국적동포의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, 조기적응, 사회통합, 체류·영주·국적 취득 지원 등"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, 법인 또는 단체를 동포체류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업무 범위, 지정 요건 및 지정 취소요건을 정하고자 함(안 제16조의2 신설).
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조의2(동포체류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 포의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, 사회통합·조기적응 및 체류자격 ·영주·국적 취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, 법인 또는 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 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, 기초생활 법 질서 준수 교육·정보제공·상담 등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원 사업
 - 2.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·영주·국적 취득 등 법적 지위 향상 지원
 - 3.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·문화·홍보 사업·통역 지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 - ③ 법무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,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

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 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6조의2(동포체류지원센터의
	지정 등)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
	국적동포의 기초생활 법질서 준
	수 교육, 사회통합·조기적응
	및 체류자격・영주・국적 취득
	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
	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, 법인
	또는 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
	(이하 "센터"라 한다)로 지정할
	<u>수 있다.</u>
	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
	<u>수행한다.</u>
	1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9조에
	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, 기초
	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・정보
	제공・상담 등 조기적응프로
	그램 지원 사업
	2.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
	체류자격・영주・국적 취득
	등 법적 지위 향상 지원
	3.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
	는 교육·문화·홍보 사업·
	통역 지원 등 그 밖에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사업

- ③ 법무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,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기 준 및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처 분의 세부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